

● 제285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
2019 2. 2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44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호대 의원(발의의원 10명)
- 나. 제안일 : 2019. 2. 7.
- 다. 회부일 : 2019. 2. 7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과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로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, '19년 1월 기준)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포석 설치 정도임.
- 현재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는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, '19년 1월 기준)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우와 지원

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과 기념표석 설치 정도임.

나. 주요내용

- 의사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공연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1호).
- 약칭과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수정함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, 서울식물원 등의 유료 공원과 서울시 소유의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의사상자¹⁾ 지원사업(안 제4조제1호)

- 서울시는 2011년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 이후 서울시는 의사자 유족, 의사상자, 의상자 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, 의사자 기념표석을 지원해오고 있음.

1) - 의사자(義死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.
- "의상자(義傷者)"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.

※ 의사상자 지원 추진 실적(2019년 1월 기준)

□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실적 : 146명, 2,776,500천원 지급

연 도	의사자		의상자		총 계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2018년	1	30,000	-	-	1	
2017년	2	60,000	3	8,500	5	
2016년	4	120,000	2	3,500	6	
2015년	5	150,000	1	10,000	6	
2014년	35	1,050,000	20	44,750	55	1,094,750
2013년	38	1,140,000	35	159,750	73	1,299,750
계	85	2,550,000	61	226,500	146	2,776,500

※ '11년 市 지원조례 제정, '12년 조례개정 → 이전 의사상자에 소급지급

□ 의사자 기념표석 현황 : 14건

연 도	계	'97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
인 원	14	2	3	-	2	-	3	2	1	-	1
자치구	14	성동, 중구	중랑, 광진, 성북	-	송파 노원	-	영등포(2), 중랑	마포, 강남	서초	-	은평

- 조례 제정 당시 시 차원의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비하여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를 신설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	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「법」 ----- -----

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<u>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</u> 감면	-----. 1. ----- - <u>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</u> -----
---	--

- 현재 시는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, 의사상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와 공연 이용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사안을 규정한 개정안 제4조제1호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 - 다만, 이용료 등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장하는 각 조례에 직접 감면 내용이 규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나.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(안 제4조- 제8조)
- 안 제 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은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문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는 바,
- 조례 제정 당시 제4조제1호의 신설 이유가 차원의 의사상자 및

유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이 미비하다는 취지였고 그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을 반영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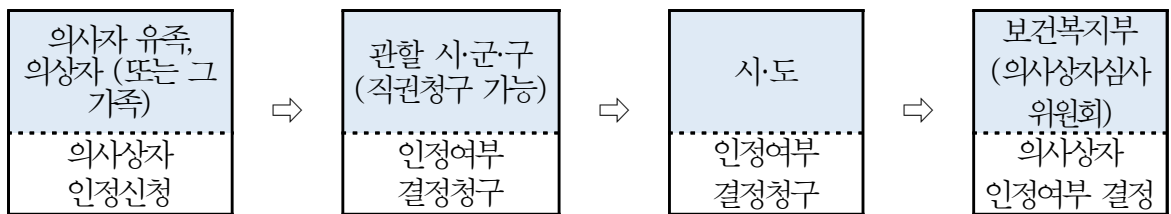
- 따라서 현재 의사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공원 입장료, 공연 이용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이용료 등의 감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장하는 각 조례에 직접 감면 내용이 규정화 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안 제 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은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문구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(조례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·제3조)

- 지급대상 :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

※ 의사상자 인정절차(보건복지부)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 포함) →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/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→ 서울시 →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



- 지급방법 :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

※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: 현금수령증

- 지급순위

· 의사자 : 유족(순위 : 1. 배우자, 2. 자녀, 3. 부모, 4. 조부모, 5. 형제자매)

· 의상자 : 본인(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)

※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

▶ 공동신청 :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

▶ 단독신청 : 특별위로금 포기서(붙임 2)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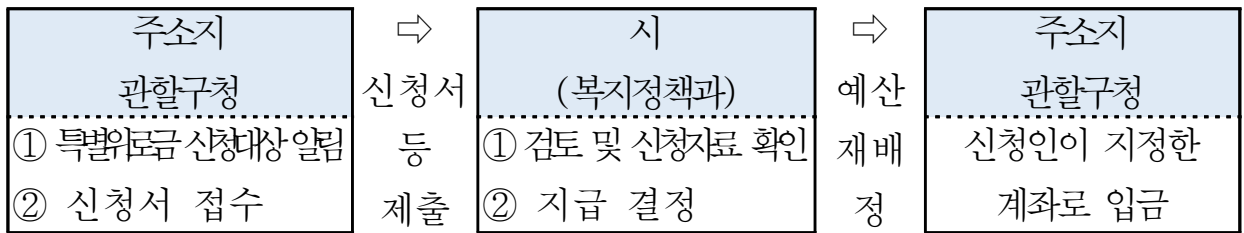
- 지급금액 : 의사자(3천만원), 의상자(1급 1,500만원 ~ 9급 50만원)

<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>

(단위: 천원)

부상등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지급액	15,000	12,500	10,000	7,500	5,000	3,000	1,000	750	500

- 지급절차



- 소요예산 : 150,000천원

: 산출근거 : 30,000천원(의사자) × 4명 = 120,000천원

15,000천원(의상자 1급) × 2명 = 30,000천원

□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지원(조례 제4조)

- 설치대상 :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

- 설치장소 :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

·사고현장이 도로·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(교통장애, 미관저해 등)상

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,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